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2.9.11 (화) 10:00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전문위원 송장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수완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2년 8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3. 제안 이유

-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시상 시기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상패를 수여하고, 시상금 수여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